#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40

발의연월일 : 2021. 6. 17.

발 의 자:이 영・金炳旭・김영식

김예지 · 김용판 · 김정재

김형동・양금희・유경준

윤창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 월 말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음.

중소기업은 기업자산의 일시적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의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고, 기업 정상화 이후 매각자산을 재매입하고 있음. 해당 방식은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각과 재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발생하는 구조임.

이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과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 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각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매각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3항 및 제5항).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를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⑤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해당 자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 ② 제5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1일 이후 취득한 자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	3
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	
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취득세의 1</u>	취득세를
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면제한다.
까지 경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제4
	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해
	당 자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10
	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취
	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u>제한다.</u>